

광주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8350 판결 [건물명도 등]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2024. 11. 27.

판결 선고2024.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700,000원 및 2023. 5. 2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이재석

별지

1) 정정된 청구취지 기재의 '2023. 6. 21.'은 '2023. 5. 21.'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